

고성군의회위원회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56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9. 9. 6.

발 의 자 : 최 현 덕 의원 외 4인

1. 개정이유

- 0 정부의 행정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' 99. 8. 1일자 고성군 행정기구조직 개편(과명칭변경)공포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부서를 새로 조정 정립하는데 있음.

2. 주요골자

- 0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과 부서명칭 변경

상임위원회별 명칭변경 (실과사업소)

해 당 위 원 회	당 초	변 경	비 고
의회운영위원회	-	-	-
총 무 위 원 회	행 정 과 지역협력과 세무회계과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	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 무 과 당항포관리사무소	8개실과 사업소중 3개과 1사업소 명칭변경
산업건설위원회	경 제 통 상 과 농업기술센터 (농업기술과)	지 역 경 제 과 농업기술센터 (기술보급과)	9개과 사업소중 2과 명칭변경

3. 참고사항

- 0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
- 0 고성군의회위원회회조례

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제2항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②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총무위원회

기획감사실, 자치행정과, 민원봉사과, 문화관광과, 재무과, 사회복지과, 보건소,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2. 산업건설위원회

지역경제과, 환경녹지과, 수산과, 건설과, 도시과, 농업기술센터 (농업진흥·기술보급·축산과)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생략</p> <p>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, <u>행정과</u>, 민원봉사과, <u>지역협력과</u>, <u>세무회계과</u>, 사회복지과, 보건소, <u>당항포 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2. 산업건설위원회 경제통상과, 환경녹지과, 수산과, 건설과, 도시과, 농업기술센터(농업진흥·<u>농업기술</u>·축산과),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3. 생략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생략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, <u>자치행정과</u>, 민원봉사과, <u>문화관광과</u>, <u>재무과</u>, 사회복지과, 보건소, <u>당항포 관리사무소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2.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경제과, 환경녹지과, 수산과, 건설과, 도시과, 농업기술센터(농업진흥·<u>기술보급</u>·축산과),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3. 생략(현행과 같음)</p>